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2016. 6. 21.(화) 14:00

심의장소: 행정관리국장실

심의안건: 「직장상조회 정관 및 자금관리규정」 일부 개정

의결내용

-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정관 및 자금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할 것을 의결함.

주요내용

구 분		현행(구)	개정안(신)
정 관	회원자격	성동구청 산하에 재직 중인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추가대출자 격	신 설	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 후에 추가대출 가능
	위원변경	주민생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관리과장	복지정책과장, 공동주택과장, 안전관리과장
	사업계획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해 1월까지
	사업실적 결 산	3월 이내	다음해 1월까지
자금 관리 규정	전산처리	마그네틱테이프에 백업 관리	전자식 저장장치 등에 백업 관리
	대출대상 결 정	1. 소액 신청자 2. 장기 근속자	1. 신청서 접수일이 빠른 자 2. 소액 신청자 3. 장기 근속자

기타사항

-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본 의결서로 갈음하며 그 작성을 생략함.

직장상조회 운영위원

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부위원장	총무과장	박봉주	
위원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위원	기획예산과장	이운영	
위원	복지정책과장	심수택	
위원	도시계획과장	지학주	
위원	안전관리과장	장완수	
위원	보건위생과장	정주섭	

2016. 6. 21.